

전주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16814(본소), 2022가단2036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수, 전상오, 홍석범, 김기영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679,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20.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후원방문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2.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C는 위 계약 해지 전인 2019.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1. 상기 대리점1) 은 수개월간 주) B2) 의 대리점 운영 관련 전산시스템을 임의조작하여 장려금 등을 편취하여 별도의 이익을 취하여 계약 해지의 사유를 발생하게 하였음

2. 이로 인해 편취한 상당액의 별도의 이익금을 민·형사상 환수조치 하여야 하나, 계약 조건 이외의 상기 대리점 운영상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천만 원만 환수조치하도록 요청함

3. 편취한 별도의 이익금을 전액 환수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인 이천만 원만 환수하는 전제조건은 주) B과의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의 주) B과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라. 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편취된 장려금 중 2,000만 원만 원고로부터 환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매출채권회전일 장려금 중 93,679,230원을 2012. 11. 22.부터 2020. 2. 6.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환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가 위 각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서를 통해 피고와의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편취된 금액의 1/3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 원만 환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의사를 수락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 합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반소는 예비적 반소이므로,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3)).

판사 박준범

1) 원고를 의미한다.

2) 피고를 의미한다.

3)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은 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소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